

2025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 및 취업승인 신청에 따른 심사결과 공개

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취업심사 결과 및 취업심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도 공개

■ 공개근거 :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6

■ 공개대상 :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

■ 취업심사 결과

○ 취업승인 심사(1건) : 취업승인(1건)

| 퇴직당시 | | | 취업(예정) | | 심사결과 | 결정사유 |
|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소속 | 직급 | 퇴직시기 | 기관 (직위) | 시기 | | |
| 성주군 | 지방서기관 | 2024년 12월 | 성주산업단지 관리공단 (부장) | 2025년 6월 | 취업승인 |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|

※ 상기내용은 취업심사 결과이며, 실제 취업여부와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.

【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】

| 구 분 | 주 요 내 용 |
|-------|--|
| 취업제한 |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·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|
| 취업불승인 |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「공직자윤리법 시행령」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*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*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, 경영개선, 임용 전 종사 분야,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|
| 취업가능 |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·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|
| 취업승인 |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(「공직자윤리법시행령」 제34조제3항각호)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|